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518 제출연월일: 2024. 9. 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 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 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안 제17조 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안 제129조제1항제 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 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 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 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제352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제12조제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 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 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의 금액"을 "출자"로, "출자의 가액"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출자"를 "주식·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자의 가액과 금전"을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 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 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17조제4항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출자의 액면가액"을 "출자지분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의 취득"을 "출자지분의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를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중 "부대비용"을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2024년 1 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20세 이하"를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2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5 5만원"으로,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 중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7조의6제1항

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이 조 제1항제4호를"을 "제4호를"로 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 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제94조제1항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 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 각 호"를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4조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 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 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을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다음에 제11절(제1 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 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

- 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 주주에 해당할 것
-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 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계산한다.
 -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 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 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 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 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 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 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

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 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 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한다.
 -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 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 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 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 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 및 제7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119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를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 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 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 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4절(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계약"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0조제3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제1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항 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

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4조의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9조 중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포함한다)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

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 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2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3·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제10호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 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제5항
 ·제6항·제7항 및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 3.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 규정, 제177조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 4.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 제2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3·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제17조제1항제9호·제10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배당소득의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의 감소 또는 재평가적립금·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 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 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 제9조(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19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 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1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 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3조(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제4조(소득의 구분) ①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종합소득	1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u>제2호, 제2호의2</u> 및	<u> </u>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			
득을 합산한 것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금융투자소득	<u><삭 제></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②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			
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			
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 호에 따른 <u>투자신탁</u>. <u>다만</u>, 2024 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생 략) <신 설>

③ (생략)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러. (생 략)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투자신	<u> </u> 탁(제	네17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
로 한정한	<u>다) < '</u>	단서	삭제>

- 3. (현행과 같음)
-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비과세소득) -----

- 1. 2. (현행과 같음)
- 3. -----

가. ~ 러. (현행과 같음)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버. ∼ 저. (생 략) <신 설>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 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 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 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 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을 기준으로 6세 이하(6 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 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 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 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버. ~ 저. (현행과 같음)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4. • 5. (생략)

개정법률

-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2. (생략)
 -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 <삭 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 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3. ~ 11. (생략)
 -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12. 제1호-----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 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 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 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 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 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 되는 기준이 있을 것

4. • 5.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1. · 2. (현행과 같음)

3. ~ 11. (현행과 같음)

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 이 있는 것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③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 개정법률 기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저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5. (생략)

<u><신 설></u>

<신 설>

13. <u>ষাই</u>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세17조(배당소득) ①
<u>.</u>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
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
부터의 이익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

<신 설>

- 6. ~ 8. (생략)
-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 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 익

-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6. ~ 8. (현행과 같음)
-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

 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

 부터 제9호까지----

 2

- 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u>출자의 금</u> 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u>출자의 가액</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

.
1
출자지분을
<u> </u>
2
۷.
ネ
<u>출자</u>

출자지분의 가액
출자지분의 가액 출자지분의 가액
출자지분의 가액
출자지분의 가액
출자지분의 가액
출자지분의 가액

당 <u>주식·출자</u>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 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
 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
 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
- 5. · 6. (생략)
-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 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 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u>주식·출자지분</u>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버스이 케치크에
-	<u>그 밖의 재산가액</u>
-	<u>그 밖의 재산가액</u> <u>출자지분을</u>
-	
	<u>출자지분을</u>
	<u>출자지분을</u>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 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

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
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
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
<u> 정한다)</u>
$\underline{2}$. \sim $\underline{5}$. (현행 제 1 호부터 제 4 호
까지와 같음)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
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
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4
출자지분을
출자지분의 액면가액

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 액을 그 주식 또는 <u>출자의 취득</u> 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u>주식 및</u>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⑥ (생략)

1. ~ 5. (생 략) <신 설>

출자지분의 취
<u> 두</u>
⑤ 주식, 출
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
<u>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u>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히
<u>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u>
⑥ (현행과 같음)
계90ス(그리人트) ①

- 1. ~ 5. (현행과 같음)
-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②・③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u>퇴직소</u> <u>득・금융투자소득</u>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 27.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 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 1. ~ 11. (생 략)
 -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u>위반에 대한 제재로서</u> 부과되는 공과금
 - 13. ~ 15. (생략)
 - ② ·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21조(기타소득) ①
<u>퇴직소</u>
<u> </u>
1.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1. ~ 11. (현행과 같음)
12
<u>위반을</u>
이유로
13. ~ 1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7 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2. (생략)
-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 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 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과 <u>부대비용</u>을 필요경비로 한 다.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u>2025년 1월 1일</u> 전에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취득가액은 <u>2024년 12월 31일</u>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한다.

<신 설>

법률 제17757호 소늑세법 일무
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1.・2. (현행과 같음)
3
<u>취</u> 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
② ~ ④ (현행과 같음)
5
2027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
<u>.</u>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
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
자산의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기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 2·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조,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

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
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
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u>⑦</u>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의 계산 특례) ① <u>제16</u>
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

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 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 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제7항제 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 환·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 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 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 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 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 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제50조(기본공제) ①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 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대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이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생 략)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

50소(기본공제) ①
1.•2. (현행과 같음)
1. • 2. (包%片 包音)
3
기 (침체기 기 O)
가. (현행과 같음)
나

자"라 한다)로서 <u>20세 이하</u>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 마. (생략)

②·③ (생 략)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경우로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다.이경우공제한도는연간 100만원으로한다.

② (생략)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

<u>20세 이하</u>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u>에서 같다)</u>
<u>.</u>
<u>.</u>
다. ~ 마.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7
<u>2027</u> 너 12월 31일
<u>2027</u> 년 12월 31일

정법률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 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생 략)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2. (생략)
 - ③ ④ (생 략)

_1	1	-
\mathcal{A}	ш	두
´Α'	Ĥ	\Rightarrow

세5/소의건(간섭무사외사등으로부
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1
<u>「자본시장과</u>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
<u>장"이라 한다)</u>
<u>.</u>

- 2.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
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 3. 3명 이상인 경우: 연 <u>35만원</u> 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u>30</u> 만원을 합한 금액
- ② 삭 제
- ③ ④ (생 략)
-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 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 법 등) ① (생 략)
 -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 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 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 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1 <u>25만원</u>
2 <u>55만원</u>
3 <u>55만원</u>
<u>40</u>
<u>만원</u>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
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
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세특
<u>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u>
<u>76圣</u>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 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 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 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 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 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 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 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 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 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 개정법률 기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u><삭 제></u>

개정법률

제1절 정의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87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 | <삭 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ㅣ 제 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 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 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 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 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 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 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계 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 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 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u><삭</u>제>

정법률

다.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 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 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당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에 해당하는 부분

나. 채권등의 상환

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 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개정법률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 신탁의 이익
-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법률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 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 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 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 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삭 제>

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 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
 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
 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
 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거나 제87조의25
 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
 일 것
-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 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 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 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 (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 득"이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 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 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 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계산한다.
 -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 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 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제1 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 세액에서 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제87조의20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 우로 한정한다)하여 계산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제 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 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를 더하여 계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 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 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 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제6항에 따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삭 제>

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 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 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 투자기구의 해지 • 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 한 이익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4조제7항에 따 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 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의 이익
-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 로 발생하는 소득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① <삭 제>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 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 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 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

개정법률

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 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 액으로 한다.

-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 투자결손금"이라 한다.
-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 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① 주 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하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 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 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식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① 채 |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 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 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 요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 액)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 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자 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 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 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법률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11(주식등·채권등·투 <삭 제> 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 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 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 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 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 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 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 <삭 제> 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 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 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 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

개정법률

개정법률

액

-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 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 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 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 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 <삭 제> 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 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 채권 등 •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 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 •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 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 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 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 채권등 • 투자계약증권에 대하 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 비에 산입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 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 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 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 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이라 한다)
-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가업상속공제적 용률)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 용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 <삭 제> 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 도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 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 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 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 다.

- ③ 삭 제
-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

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 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의 금 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 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 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 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 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 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 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 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 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개정법률

<삭 제>

파생결합증권의 상환·환매· 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 익을 포함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 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법률

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① | <삭 제> 파생상품소득금액(제87조의6제 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 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 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구체적 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 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 (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2.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 하여 평가한 가액
- 3.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 ·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법률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 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 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 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 다.

-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 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 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 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

개정법률

<삭 제>

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 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 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 한 소득금액

- 라.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 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 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삭 제> 세액의 계산

개정법률

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 | <삭 제> 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 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u>같</u>다.

금융투자소득	21) O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ગભી છે. રુગો	6천만원 + (3억원	
3억원 초과	초과액 × 25퍼센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 <삭 제> 감면)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 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 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 금융투자소득세 $= A \times \frac{B-C}{D} \times E$
- A: 제87조의5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 소득 산출세액
-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 C: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 D: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 세표준
-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감면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 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 득세의 감면을 금융투자소득금 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 투자소득세액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법률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 | <삭 제> 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 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 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 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 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 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 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_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 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라 한다.

개정법률

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 〈삭 제〉 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 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 (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 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 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 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 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법률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 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 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 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 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 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 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 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 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 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 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 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 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 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 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 외한다.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 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 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ㅣ <삭 제> 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 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

개정법률

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 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 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절 금융투<u>자소득에 대한</u>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 | <삭 제> 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①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 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 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 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 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 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 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 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 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 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법률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 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 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 ·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7조 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개정법률

<삭 제>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 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 에 따라 징수한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 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 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 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 는 세액을 징수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 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 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 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 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u> <u>수한다.</u>

-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 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 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 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 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 른 확정신고납부세액
-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 른 수시부과세액
-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개정법률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 <삭 제> 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57조의2, 제 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 다.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 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은 "1년"으로 본다.

개정법률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제88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ㅣ 제ㅣ 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 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 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 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1. (현행과 같음)
- 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한다.

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 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 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5. ~ 10.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 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 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 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 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다.

②・③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 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 10. (현행과 같음) 개정법률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u>퇴직소득</u>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법률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 략) <u><신 설></u>

- ______
- 1. 2. (현행과 같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 <u>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주식등
 -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 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 하는 주식등
 -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중 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 및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4. (생 략) <신 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 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 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 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 <u>서 "중소기업"</u>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 한다.
-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4. (현행과 같음)
-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 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6. (생략)

② <u>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u> <u>조 제1항제4호</u>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이 조 제1항제4호를</u> 적용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소멸된 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 하에서 같다)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자산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의 양도차익을계산할때양도가액에서 공제할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다음 각호의기준을 적용한다.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u>발</u>
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	13
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	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한
<u>다)</u>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	
<u>제4호를</u>	
<u>.</u>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	비
계산 특례) ①	
<u>10</u> 년(제94조제 <u>1</u>	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	는
<u>1년)</u>	
제94조제1항제1호 및 기	<u>स्री3</u>
<u>ŏ</u>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 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 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 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 로 한다.
- 1. 2. (생략)
- ⑤ (생략)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 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 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 1. · 2. (생략)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
조의2제1항 및 제11항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 1. 2. (현행과 같음)
-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 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 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

<u><신</u>설>

<신 설>

6. (생략)

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 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 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 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 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 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 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 가한 가액

6. (현행과 같음)

<신 설>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 ②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 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 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단서 신설>

④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 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 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8.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u>다만, 다른</u>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

개정법률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

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 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 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생략)

<신 설>

<신 설>

4. (생략)

②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 개정법률 기

-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저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1. (생략)

<u><신</u> 설>

<신 설>

산 등) ①
<u>.</u>
1. (현행과 같음)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
<u> </u>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
<u> </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내정법률
네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
1. (현행과 같음)
<u>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u>
<u> 두</u>
3 제94주제1항제5항에 따른 소

<u> 득</u>

4. (생략)

②・③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10. (생 략) <u><신 설></u>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1. ~ 10. (현행과 같음)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11. 세94도세1형세3오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
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
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

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71) O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 과액 × 25퍼센트)	

<u>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u> <u>하는 주식등</u>

-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 른 자산

<u>가. 중소기업의 주식등</u> <u>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u> 분의 10

<u>13.</u>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 설>

<신 설>

14. (생략)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⑦・⑧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 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 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

<u>파생상품등</u>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
의 20	
14.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2호·제3호</u>	및 제11

- 1. ~ 3.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 ⑦·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 ① <u>제94조제1항 각 호(같</u> 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 5호는 제외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 3. (생략)
- ②·③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 산) ① (생 략)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 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 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 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 1. · 2. (생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
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
산)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4. (생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⑧ (생 략)
 -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 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times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 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4.	(현행과	같음)
т.	\ 1 <u>'</u> () '	- $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8) (현행과 같음)

9
<u>제94</u>
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 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_	

개정법률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 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 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 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 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 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 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 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 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 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 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 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제27조·제33 조·제39조·제43조·제44조· 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 82조를 준용한다.

<신 설>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 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 대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소(순용규정) <u>()</u>	제118조(순봉규정)	<u>(1)</u>	
-----------------------	-------------	------------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 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 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 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 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 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법률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개정법률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개정법률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 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 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 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 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 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 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 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 년 이상일 것
-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 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 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

<신 설>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 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 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
- <u>⑤ 제4앙에 따른 양도소득과세</u>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신 설>

개정법률

<신 설>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 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 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 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양도소득	계 으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					
3억전 소파	과액 × 25퍼센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 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

<신 설>

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 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 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 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 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 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

<신 설>

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 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 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하는 경우
-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 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 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 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 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 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신 설>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 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 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 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 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 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 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

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등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 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 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 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 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 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 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 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 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 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 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법률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 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 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 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 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 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 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 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을 상속받은 경우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 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신 설>

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 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 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 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 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 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제 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2호의 모든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 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 득

나. (생략)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이익 중 대

개정법률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
드)	
1	
	<u>제7호</u>
가.・나. (현행과	같음)
2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 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익

마. (생 략)

3. ~ 12. (생략)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 등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 례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u>비거주자</u> 또는 적격외 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을 신 청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 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 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3. ~ 12. (현행과 같음)

이자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 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 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 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4) ---------- 비거주자(제3항에 따 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

⑤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 하여 지급받는 -----

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 • 납 부하여야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 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삭 제>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국외투자기구

<신 설>

<신 설>

<산	제>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 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 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 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관한 과세 특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 <삭 제> 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 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 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

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 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 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 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 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 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 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 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 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 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 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 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 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 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 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개정법률

<삭 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 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계산한다.
- 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87조의12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 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 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 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 두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삭 제> 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 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 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 과액 × 25퍼센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6(조정공제) ① 국외전 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26조 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개정법률

개정법률

<삭 제>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 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 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26 조의5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 | <삭 제>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 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 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 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 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26 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 2항에 따른 필요경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 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하는 경우
-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26조 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 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 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 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 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 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

개정법률

<삭 제>

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 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7제1항에 따 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 <삭 제> 등에 대한 신고 · 납부 및 가산 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 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 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 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 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출국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 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 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 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 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 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 다.
-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 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 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구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제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

제126조의10(납부유예) ① 국외전 | <삭 제> 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 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국외전출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 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 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 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 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 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 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 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 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 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 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 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개정법률

<삭 제>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 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 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 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 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 오
-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 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 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을 상속받은 경우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 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 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

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26조의9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 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 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 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정법률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 | <삭 제> 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 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 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 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 조의26,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 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 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개정법률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u>제3호</u>
<u>제9호</u> 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	<u><삭 제></u>
<u>자소득</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	<삭 제>
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u> </u>
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u> </u>
	<u> </u>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 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 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	<u>⑦</u> 제6항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 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 2항을 적용한다.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 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 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부터 <u>제7항</u> 까지의 규정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 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 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 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 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 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 -- 원천징수의무자----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 외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 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 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2. (생략)
-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립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4. ~ 8. (생략)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 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②・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

1. • 2. (현행과 같음)
3
<u>계약</u>
 4 0 /최케리 가ბ)
4.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③ (현행과 같음)
4)
<u>제127</u> 조제1항제1
<u>호 및 제2호</u>

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 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 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 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 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 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 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한다.

1. • 2. (생 략)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 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 득: 해당 소득에 제1항제2호나 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 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u>.</u>
.
5
<u>제127</u> 조제
1항제2호

1. · 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 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 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 1.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 | 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 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 로 한다.

계산한 금액

공제한도금액 = A × -

- A: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 당 과세기간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
-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 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 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 의 반기별 합계액
- C: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 당 과세기간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 금액

(7)·⑧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 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 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 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

(7) · (8) (현행과 같음)

개정법률

<삭 제>

개정법률

<삭 제>

- 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 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 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 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 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 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 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 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

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 수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 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 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 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 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 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 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 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 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 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 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 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 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 으로 본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 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정법률

<삭 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지 · ② (생 략)
 -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 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 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 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 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 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 나 징수한다.

④ ~ ⑥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년 개정법률 7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 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제150조(납세조합의 ·② (현행과 같음	-)
③ 31일	2027년 12월
 분의 <u>3</u>	<u>100</u>
 100분의 3	
④ ~ ⑥ (현행과 법률 제17757호 소 개정법률	
제155조의2(특정금전 천징수의 특례) 저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 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 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 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건
-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할 것
-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 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제156조의2(ㅂ	비거주	주자에	대한	조시	1
조약상 비	과세	또는	면제	적용	<u>3</u> _
신청) ① -					_
					_
	<u>사업</u>	<u>소득</u> -			_
					_

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 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 · 면제 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 ⑦ (생 략)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 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 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 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 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 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 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 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 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 세법 |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 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 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 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
- <u>"</u> 127조제5항
<u>121 = 10 6</u>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 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 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 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 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 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 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 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 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 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
일)까지

- 1. ~ 8. (생략)
- 9. 금융투자소득
- ② ~ ①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 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 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신 설>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①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의 제출) ① <u>「가상자산 이용자</u>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분기 또는 연도----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 는 국세청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 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 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 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해산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 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u>임원</u>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 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가.·나. (생 략)

2. · 3. (생략)

②・③ (생 략)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 제은 제150조에 따라 <u>소득세</u>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1
임원
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169조(교부금의 지급)
근로소득에 대
한 소득세
<u>.</u>
루 제17757중 스트세버 이브

개정법률

- - 1.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 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 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 2.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

개정법률

-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로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부과에 필요한 자료
 -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 관할 것

②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 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후 단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

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 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 는 자료

청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 한 자료 제출 방법 •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 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 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 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1. ~ 3. (생 략) <신 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	에 대한 과
태료)	
	<u>মা3ই</u>
<u>및 제4호</u>	
.	
1. ~ 3. (현행과 같음	$\left(\frac{2}{1}\right)$
4. 제164조의4제2항이	에 따른 가
<u>상자산사업자에 대</u>	한 명령

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1. (생략)
-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 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 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 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ㆍ제 4호, 제119조제12호타목ㆍ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 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 8호, 제156조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 규정: 2025년 1월 1일 3. ㆍ 4. (생 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 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 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 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

1. (현행과 같음)
2
<u>2027년 1월 1일</u>
3. ·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 례) ① -----

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 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 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하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 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하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 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 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 도 · 대여 · 인출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2027년 1월 1일
②
2027년 1월 1일
<u>.</u>

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 유)

2			 	 		_
			 	 	202	7
<u>년</u>	1월	1일	 	 		_
			 	 		_
		_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저 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 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 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 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정법률(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11223	조(비기	^시 주자의	의 국	내원천:	소득
에	대한	원천정	수의	특례어] 관
한	적용	례)			
					2027
<u>년</u>	1월 :	[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O 국세 수입 △84,438억원

(단위: 억원)

구 년	연 도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해	당	없	음		
지출								
	소 계(A)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17757호 § 4①2호의2 및 17757호 § 87의2부터 § 87의27까지 삭제)	△8,059	△16,116	△16,116	△16,116	△16,116	△72,523	△14,505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12)	△329	△329	△329	△329	△329	△1,645	△329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 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12)		추	정	곤	란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17)	+1,950	+2,680	+2,680	+2,680	+2,680	+12,670	+2,534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조정(§33)		추	정	곤	란		
수입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37)		추	정	곤	란		
1 🖪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50)		추	정	곤	란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56의3)		추	정	곤	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59의2)		△5,720	△5,720	△5,720	△5,720	△22,880	△5,720
	신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61)		추	정	곤	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확대(§97의2)		추	정	곤	란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100)		추	정	곤	란		

(단위: 억원)

_								
구 분	연 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외국인 거주자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129)		추	정	곤	란		
	납세조합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150)	△20	△20	△20			△60	△20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160의3)		추	정	곤	란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시업자 범위 보완 \$164의)		추	정	곤	란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 자에 대한 제재 신설(§164의4)		추	정	곤	란		
	소 계(B)	△6,458	△19,505	△19,505	△19,485	△19,485	△84,438	△16,888
총비	용(A-B)	6,458	19,505	19,505	19,485	19,485	84,438	16,888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 용
	17757호 제4조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 양
1	제1항제2호의2 등	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될 세수
	(소득의 구분 등)	가 감소함
	제12조제3호머목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
2	(비과세소득)	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함
	제12조제3호처목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할인하여 임직원
3	(비과세소득)	등에게 제공하는 할인금액에 과세 기준을 마련하여 세수가 증가함
	-1117 110-1	3%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
4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과하는 금액 등을 이중과세 조정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배당소득
	(11077)	세 세수가 증가함
	제33조제1항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도 필요경비 불산입
5	(필요경비 불산 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함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6	제37조제6항 (기타소득의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0	필요경비 계산)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보완함
	제56조의3제1항	2024년 종료 예정이던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20
7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27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세수가 변동함
8	제59조의2제1항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
0	(자녀세액공제)	액을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함
9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 계산 특례)	주식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 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수 증가함
10	제100조제3항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여 안분계산을 적
10	(양도차익의 산정)	용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여 세수 감소 가능
11	제129조제1항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원천징수세율)	3%에서 20%로 상향함에 따라 시행 초기 세수가 변동함
	제150조제3항	근로자 납세조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
12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장하되, 공제율을 5%에서 3%로 축소하여 세수가 변동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17757호 제4조제1항제 2호의2 등 (소득의 구분 등)	0	
2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소득)	0	
3	제12조제3호처목 (비과세소득)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1호> 기업별 종업원 할인제도 규모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4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0	
5	제33조제1항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1호>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조정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6	제37조제6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1호>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 예상 양도·취득가액 및 대상인원, 취득가액 파악 곤란 비율 등에 대한 합리적 추정 곤란
7	제56조의3제1항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1호>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 는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
8	제59조의2제1항 (자녀세액공제)	0	
9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주식등의 증여 규모 및 증여 당시 취득가액, 1년내 양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10	제100조제3항 (양도차익의 산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토지·건물 일괄 양도 사례 중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정 곤란
11	제129조제1항 (원천징수세율)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 차년도 신고·납부 시점에 세액이 정산되어 비용이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변동하며, 대상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규모 및 그 계약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운바, 합리적 추계 곤란
12	제150조제3항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O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24.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
- O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는 최근 5년의 감자차손액의 평균액이 향후 5년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7757호 §4①2호의2 및 17757호 §87의2부터 §87의27까지 삭제)
- 세수감 : △72,523억원(연평균 △14,505)
- 금융투자소득세 입법 및 유예 개정 당시 추계한 연도별 세수증가 추계치('20년)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 '25년 이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수 효과 산정
 - * 2022년 유예 개정 당시 추계한 연도별 추계치(억원): (2023년) 0 (2024년) 0 (2025년) +8,159 (2026년) +16,116 (2027년) +16,116
- O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12)
- 세수감 : △1,645억원(연평균 △329)
- '22년 연간 신생아 수, '21년 대기업 종사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세수효과 산정
- O 배당소득 배당가산율 조정(§17)
- **세수증**: **+12,670억원**(연평균 +2,534)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및 상장기업이 지급한 배당금 등을 바탕으로 세수효과 증가 규모를 추정
- O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59의2)
- 세수감 : △22,880억원(연평균 △5,720)
-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10만원씩 확대됨에 따른 '22년 자녀세액공제 공제인원과 금액 차액을 감안하여 세수 효과 산정
- 납세조합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150)
- 세수증 : △60억원(연평균 △20)
- '23년 귀속 납세조합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년) 및 세액공제율 축소(소득세액의 5%→3%) 등에 따른 세수 효과 산정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신진욱	권순배	이영주	조만희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진욱	044-215-4216	seal9012@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0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	---	---------	--------	---------	-----	-----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 기타						
〈합 계〉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

Ⅳ. 부대의견

" 해당없음 "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 해당없음 "				

Ⅵ.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신진욱	권순배	이영주	조만희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진욱	044-215-4216	seal9012@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